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. 5. 17 선고 2015가단3067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피고 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5. 17.

주 문

1.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은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2015. 12. 1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이 법원의 판단 :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57조)을 선고한다.

판사유철희

별지